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	합 계	4,965,629,524	148,968,886
일반		반회계	4,393,203,850	131,796,116
Ē	특별회계		572,425,674	17,172,770
	기타특별회계		572,425,674	17,172,770
		소방특별회계	197, 113, 177	5,913,395
	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66,676,641	8,000,299
		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	12,555,410	376,662
		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	19,580,000	587,400
		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	11,854,000	355,620
		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	64,646,446	1,939,393

- 제 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-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.
- 제 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음.
-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.
-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9,050,200천원으로 한다.
- 제 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0,2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